

구제역 발생 차단 위한 축산농가 준수사항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3일자로 구제역 국내 발생 81일만에 구제역 발생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는 이 땅에 구제역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구제역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하는 한편, 농기들은 농가대로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 구제역 청정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에 농기들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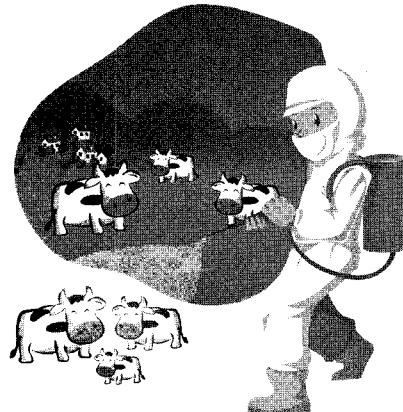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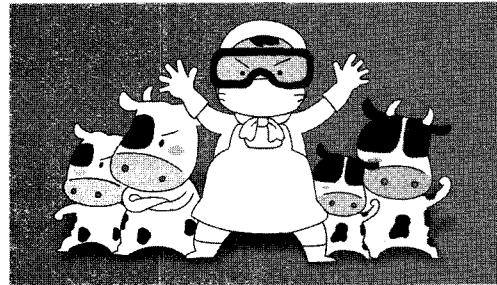
1.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 차단방역 실시
2. 가축 구입시 믿을 만한 농장에서 구입후 격리 검사 필요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생 및 방역관리 신고 숙지
4. 야생동물로부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5.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
6.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국번없이 1588-4060 신고

첫째,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외부에서 가축을 구입 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되 입식 후 일정기간 격리,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축산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농장의 위생과 소독 등 방역관리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넷째, 쥐·고양이 등의 야생동물 및 파리, 모기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살충·구서 조치로써 농장 내의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가능한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은 방문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목욕하고 세탁물을 세탁하여야 하며, 최소한 2주 이상은 다른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여섯째, 매일 농장의 가축 사양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국번없이 1588-4060 또는 1588-9060)하여야 합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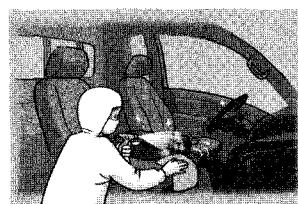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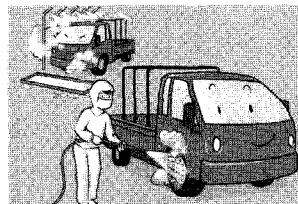
농장 소독은 이렇게 합니다!

- 지붕, 벽, 바닥 순으로
- 흙, 바닥은 알칼리제를 사용하되 몸에 안 닿도록 주의
-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도록
- 소독기간이 지난 후는 철저한 세척 실시
- 새로 동물을 입식할 경우 소독제가 완전히 마른 후 2개월 정도 지난 후 입식



연장 방역시 소독제 사용은 이렇게…

- 차량소독조 및 발판소독조
 - 장화나 차바퀴가 충분히 잠기게
 - 유기물에 강한 알칼리 또는 알데히드계 소독제 사용
 - 2~3일마다 소독수는 갈아주며 빗물이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차량 소독
 - 차량에 붙은 흙 등을 깨끗이 제거후 소독
 - 차바퀴 전체를 충분히 소독
 - 운전석 등 차량 내부는 스펀지에 소독제 묻혀 닦는다.
 - 알칼리제는 금속부식성이 있으므로 적정 농도를 지킨다.
 - 음수소독
 - 염소제, 과산화초산제 등의 소독제
 - 농도는 소독제별로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따름
- ※ 성분별 소독제 국내허가 현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가축방역/구제역/소독약품을 확인



녹색방역! 녹색환경!

- 다량의 소독제가 하수구나 분변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제 배출구를 별도로 만든다.
- 물고기 등 수생환경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